



2012년도 인천광역시 영재교육 시행계획 및 운영 지침



2012년 3월 21일

차 례

- 2012년도 영재교육 시행 계획1
 - I. 개요 1
 - II. 추진 방향 2
 - III. 추진 계획 3
 - IV. 세부 추진계획 4
 - V.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 선발 16

- 2012년도 영재교육 운영 지침25
 - I.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지침 25
 - II.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 32
 - III. 영재교육 운영예산 집행 지침 39
 - IV. 영재교육 활동 안전관리 지침 40

- 행정사항41

- Q & A44

- 부록(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47

2012년도 영재교육 시행 계획

II. 추진 방향

I. 개요

1. 목표

21세기의 주역이 될 국가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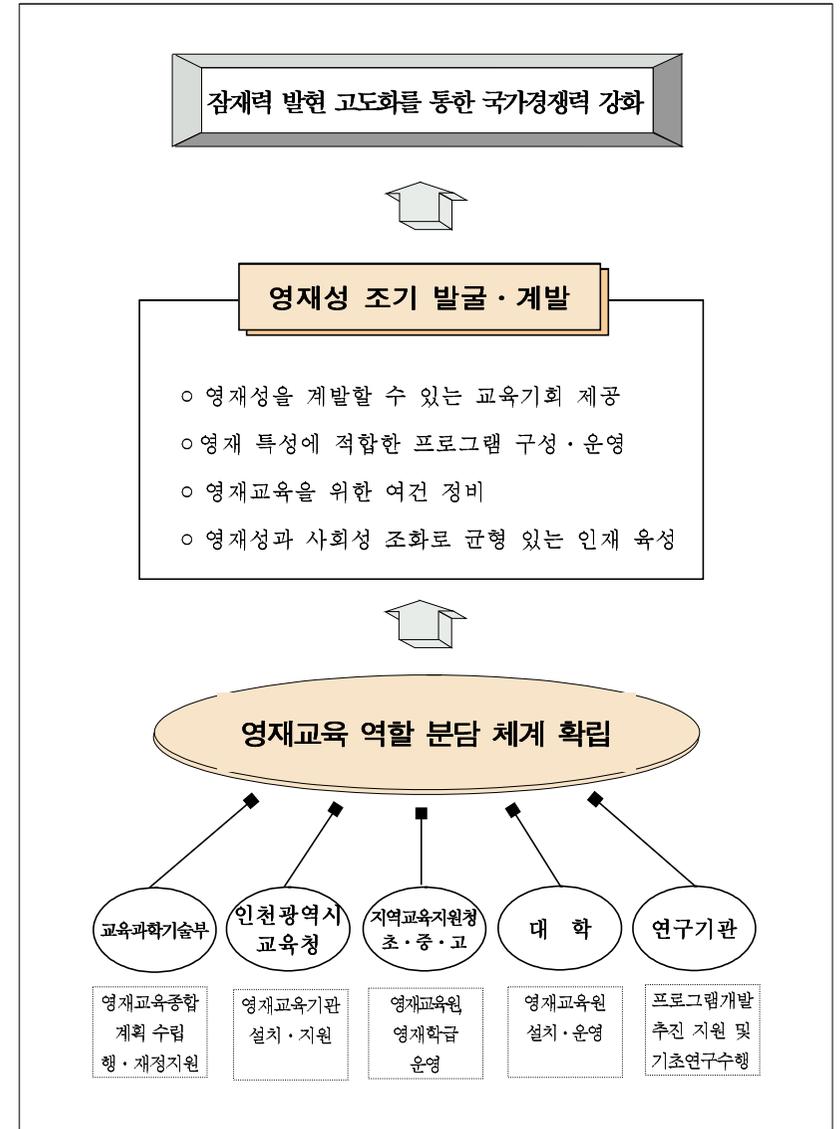
- 영재아 조기 발굴 및 영재성 계발
-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기회 제공
- 교육여건에 맞는 최적의 시행체제 마련

2. 근거

-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
-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 및 동법시행령(2002. 4. 18)
-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2. 11. 29)
-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4. 12. 22)
-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7. 12. 13)

3. 배경

- 개인측면에서의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국가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 헌법 제31조①항에 따른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12조②항에 따른 학습자의 인격, 개성, 능력 존중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교육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수립 및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 12. 17) 16개 정책과제 중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
-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4. 12. 22)에 따른 영재교육 확대 방안 모색



Ⅲ. 추진 계획

1. 목적

- 가. 잠재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아의 조기 발굴 및 육성
- 나.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자아실현과 국가 발전 도모
- 다. 수월성 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실현

2. 방침

- 가.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 영재학급 및 단위학교 영재학급 형태로 운영한다.
- 나. 영재교육원은 교육영역 및 모집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인천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광역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2)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영어영재교육원은 인천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광역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3)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인문영재교육원은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광역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4)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광역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5)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5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교육행정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다. 영재학급은 학교 급별 및 교육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초등학교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17개교에서 운영(초등 5, 6학년)하고 2013학년도 말에 종료한다.
 - 2) 초등학교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은 9교, 중학교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은 6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 모집(교육행정단위)으로 운영한다.
(단, 초등학교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은 5, 6학년 2학급씩 지속적으로 운영)
 - 3) 중학교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은 인천예술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광역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4) 중학교 지역공동 정보영재학급은 문학정보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광역단위) 모집으로 운영한다.
 - 5) 고등학교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6개교에 설치하고 지역공동 모집(교육행정단위)으로 운영한다.
 - 6)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은 별도의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방과후학교 형태(수익자 부담금 원칙)로 운영하며 교육청에

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라. 교육영역은 수학, 과학, 언어, 인문사회, 정보, 예술(음악, 미술, 무용), 발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한 영역을 운영할 수 있다.
- 마. 영재교육 대상자는 관찰·추천으로 선발하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3. 추진 중점

- 가. 영재성 계발 기회 확대 및 지원 체제 구축
- 나.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체계화 및 내실화 실현
- 다. 영재교육기관의 연계성 확보
- 라.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 마. 영재 판별도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 바.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도모
- 사. 홍보 활동을 통한 영재교육의 이해 확산

Ⅳ. 세부 추진 계획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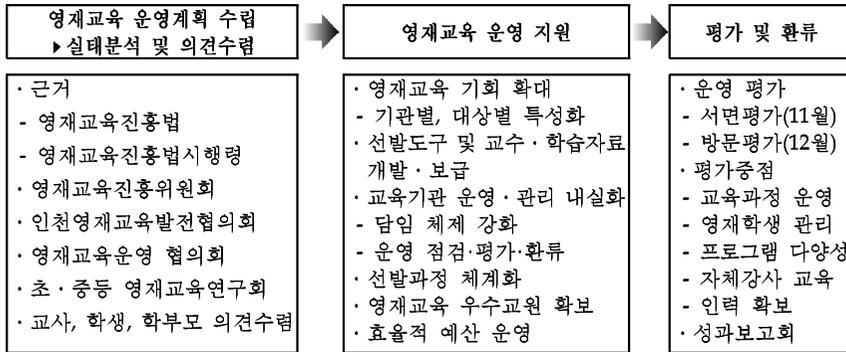
가. 영재성 계발 기회 확대

초·중·고등학생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3%로 확대하고, 수학, 과학, 언어, 인문사회, 정보, 예술, 발명영역 뿐만 아니라 통합 및 논술, 창의력, 융합교육 등의 영역을 연차적으로 추가 운영한다.

나.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영재교육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심의기관, 자문기관, 협조기관, 지원기관이 연계된 『인천광역시영재교육 발전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다.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운영



2. 영재교육기관 운영

가. 2012년도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

1) 영재교육원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인천과학고등학교)

- 교육 영역 : 수학, 과학, 정보
- 교육 대상 : 중학교 1, 2, 3학년
- 교육 편성 : 6학급 120명
- 교육 시간 : 주말 및 방학 중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영어영재교육원(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 교육 영역 : 영어
- 교육 대상 : 중학교 2, 3학년
- 교육 편성 : 6학급 84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인문영재교육원(인천국제고등학교)

- 교육 영역 : 인문사회영역
- 교육 대상 : 중학교 1학년
- 교육 편성 : 2학급 40명
- 교육 시간 : 주말 및 방학 중

라) 지역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 운영 기관 : 5개 지역교육지원청(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 교육 영역 : 수학, 과학(통합)
- 교육 대상 : 중학교 1, 2, 3학년
- 교육 편성 : 33학급 66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마)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교육 영역 : 음악, 미술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5, 6학년
- 교육 편성 : 4학급 4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 운영 기관 : 3개 영재교육원(인천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경인교육대학교부설 계양영재교육원, 재능대학 영재교육원)
- 교육 영역
 - 초등 : 수학·정보, 과학, 중등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 교육 대상
 - 초등 : 초등학교 1~6학년, 중등 :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 2학년
- 교육 편성 : 31학급 428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2) 지역공동 영재학급

가) 초등학생 지역공동 영재학급

- 운영 기관 : 지역공동 17개 초등학교
 - 남부 : 4기관(관교초, 신선초, 대화초, 송현초)
 - 북부 : 4기관(미산초, 굴포초, 백운초, 부일초)
 - 동부 : 4기관(약산초, 청량초, 석천초, 동막초)
 - 서부 : 4기관(안산초, 봉수초, 완정초, 성지초)
 - 강화 : 1기관(강화초등학교)
- 교육 영역 : 수학·과학(통합)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5, 6학년
- 교육 편성 : 69학급 1,38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

- 운영 기관 : 지역거점 8개 초등학교 및 6개 중학교
 - 남부 : 2기관(학익초, 인주중)
 - 북부 : 2기관(부마초, 구산중)
 - 동부 : 5기관(담방초, 선학초, 소래초, 만수여중, 인천해송중)
 - 서부 : 4기관(안산초, 원당초, 동인천여중, 계산중)
 - 강화 : 1기관(감룡초)
- 교육 영역 : 발명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 교육 편성 : 24학급 48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다) 중학생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

- 운영 기관 : 1개 고등학교(인천예술고등학교)
- 교육 영역 : 음악, 미술, 무용
- 교육 대상 : 중학교 1, 2, 3학년
- 교육 편성 : 7학급 7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 운영 형태 : 학년제 및 무학년제 운영

라) 중학생 지역공동 정보영재학급

- 운영 기관 : 1개 고등학교(문학정보고등학교)
- 교육 영역 : 정보
- 교육 대상 : 중학교 1, 2, 3학년
- 교육 편성 : 6학급 12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마) 고등학생 지역공동 영재학급

- 운영 기관 : 지역거점 6개 고등학교
- A지구 : 3교(제물포고, 인천고, 인천여고), B지구 : 3교(부평고, 계산고, 가림고)
- 교육 영역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교육 대상 : 고등학교 1, 2학년
- 교육 편성 : 24학급 480명
- 교육 시간 : 주말 및 방학 중

3) 단위학교 영재학급

가) 초등학생 단위학교 영재학급

- 운영 기관 : 200개 초등학교 400개 학급(예정)
- 교육 영역 : 전 영역(수·과학, 인문, 발명, 정보, 논술, 창의력, 융합 등)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 교육 편성 : 1학급 2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나) 중학생 단위학교 영재학급

- 운영 기관 : 40개 중학교 40개 학급(예정)
- 교육 영역 : 전 영역(수·과학, 인문, 발명, 정보, 논술, 창의력, 융합 등)
- 교육 대상 : 중학교 1~3학년 또는 무학년제 1학급
- 교육 편성 : 1학급 20명
- 교육 시간 : 주중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 중

나. 2012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운영 현황

* 2012. 2. 29 현재 학생수 : 393,117명

구분	기관명	교육대상	학급수	인원	교육영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9개원)	남부영재교육원	중 1,2,3	6	120	수학, 과학			
	북부영재교육원	중 1,2,3	6	120				
	동부영재교육원	중 1,2,3	9	180				
	서부영재교육원	중 1,2,3	9	180				
	강화영재교육원	중 1,2,3	3	60				
	과학영재교육원	중 1,2,3	6	120	수학, 과학			
	영어영재교육원	중 2,3	6	84	영어			
	예술영재교육원	초 5,6	4	40	미술, 음악			
	인문영재교육원	중1	2	40	인문사회			
	소계		51	944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4개원)	인천대영재교육원	초등과정	초 1~6	15	178	수학, 과학, 정보		
		중등과정	중2,3	10	182			
	계능대학영재교육원	재능대	초등과정	초 2,3	5	50	수학, 창의력	
	경인고대	계양영재교육원	초등과정	초4-5	2	30		
	계양영재교육원	중등과정	중1-3	2	30	수학, 과학		
	소계		46	520				
지역공동 영재학급 (34교)	초등학교 (17교)	남부	송현초등학교	초 5	1	20	수학, 과학	
			관교초등학교	초 5,6	6	120		
			신선초등학교	초 5,6	4	80		
			대화초등학교	초 5,6	4	80		
			미산초등학교	초 5,6	4	80		
		북부	갈포초등학교	초 5,6	4	80		
			백운초등학교	초 5,6	4	80		
			부일초등학교	초 5,6	4	80		
			안산초등학교	초 5,6	6	120		
			봉수초등학교	초 5,6	4	80		
	서부	관정초등학교	초 5,6	4	80			
		성지초등학교	초 5,6	4	80			
		정량초등학교	초 5,6	6	120			
		약산초등학교	초 5,6	4	80			
		석천초등학교	초 5,6	4	80			
	동부	동막초등학교	초 5,6	4	80			
		강화	강화초등학교	초 5,6	2	40		
		소계		69	1,380			
		예술(1교)	인천예술고등학교	중1,2,3	7	70		미술, 무용
		정보(1교)	문학정보고등학교	중1,2,3	6	120		
중등발명(6교)	남부 1교	중1	1	20	발명			
	북부 1교	중1	1	20				
	동부 2교	중1	2	40				
	서부 2교	중1	2	40				
	남부	학익초등학교	초5,6	2		40		
	북부	부마초등학교	초5,6	2		40		
초등 발명 (9교)	동부	선학초등학교	초5,6	2	40	발명		
		담방초등학교	초5,6	2	40			
		소래초등학교	초5,6	2	40			
	서부	안산초등학교	초5,6	2	40			
		원당초등학교	초5,6	2	40			
		동인천여자중학교	초5,6	2	40			
		갑룡초등학교	초5,6	2	40			
소계		37	670					
고등학교 (6교)	제물포고등학교	고 1,2	4	80	수학, 물리			
	인천고등학교	고 1,2	4	80		화학, 생물		
	인천여자고등학교	고 1,2	4	80		수학, 지학		
	부평고등학교	고 1,2	4	80		수학, 물리		
	계산고등학교	고 1,2	4	80		화학, 생물		
	가림고등학교	고 1,2	4	80		수학, 지학		
소계		24	480					
단위학교 영재학급	초등학교 (200교)	단위학교영재학급(200기관)	초 4, 6	400	8,000	전 영역		
	중학교 (40학급)	단위학교영재학급(40기관)	중1~3	40	800	전영역		
총계 291기관			667	12,794	3.25%			

3.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

가. 201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선발

- 1) 선발 기간 : 2012. 12 ~ 2013. 3
- 2) 선발 방법 : 관찰·추천에 의한 선발
 - 1단계 - 학생 및 학부모 희망에 의한 학교장 추천
 - 2단계 - 영재성 판별 검사
 - 3단계 - 심층 면접
- 3) 선발대상 및 인원

기관	선발대상	영역	학급 수	인원(명)	비고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중1학년	수학·과학	11	220	관찰·추천	
과학영재교육원 (인천과학고)	중1학년	수학·과학 정보	2	40	자체 선발	
영어영재교육원 (미추홀외고)	중2학년	영어	3	42	자체 선발	
인문영재교육원 (인천국제고)	중1학년	인문·사회	2	40	자체 선발	
예술영재교육원 (인천학생문화회관)	초5, 6학년	음악, 미술	4	40	자체 선발	
영재 학급	중학생 발명	중1학년	발명	6	120	
	고등학교	고1학년	수학	4	80	
			과학	8	160	
예술영재학급 (인천예술고)	중1, 2, 3학년	음악, 미술, 무용	7	70	자체 선발	
정보영재학급 (문학정보고)	중1학년	정보	2	40	자체 선발	
총 계				47	812	

- 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가) 기능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구성 운영
 -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영재교육전문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 설치·운영 : 영재교육기관별 학칙에 반영

나. 영재교육의 영역별, 단계별 연계성 유지

고 등 학 생	고등학교 영재학급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제물포고, 부평고	인천고, 계산고	인천여고, 가림고	추후 운영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발명, 융합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학 생	시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시교육청 영양영재교육원	시교육청 인문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예술영재학급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	지역공동 정보영재학급	
	인천과학 고등학교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인천대, 경인교대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인천국제 고등학교	인천예술 고등학교	인주중 구산중 만수여중 해송중 동인천여중 계산중		문학정보 고등학교
	수학, 과학, 정보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정보,	영어	인문·사회	음악, 미술, 무용	발명	정보	



중학생 단위 학교 영재 학급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중학교 40개교(추후 증감 가능)
2012년 3월 공고 후 선정
수학, 과학, 발명, 음악, 미술, 정보, 창의력, 융합, 논술 등 전 영역



초 등 학 생	예술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영재학급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학생교육 문화회관	관교초, 신선초, 대화초, 송현초, 약산초, 경량초, 석천초, 동막초, 미산초, 성지초, 갈포초, 백운초, 부일초, 안산초, 봉수초, 완경초, 강화초	학익초, 선학초, 담방초, 소래초, 부마초, 안산초, 원당초, 동인천여중, 갑릉초	인천대, 경인교대, 계능대 영재교육원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발명	수학, 과학, 정보, 창의력, 논술, 융합등



초 등 학 생 단위 학교 영재 학급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 200개교(추후 증감 가능)
2012년 3월 공고 후 선정
수학, 과학, 발명, 음악, 미술, 정보, 창의력, 융합, 논술 등 전 영역

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영재교육 지도강사 공모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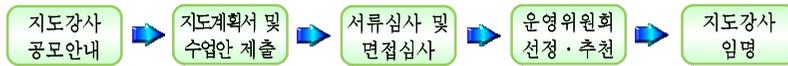
1) 목적

- 공모제를 통하여 우수한 영재교육 지도강사를 선발·위촉함으로써, 지도 강사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원 자격

- 한국교육개발원 및 인천대학교에서 영재교육 직무연수(60시간)를 이수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기타 영역별 전문가 또는 영재교육 학습지도 능력이 뛰어난 자

3) 공모 절차



4) 영재교육 지도강사의 업무

- 출석 수업, 집중수업, 원격수업 등 과정별 학생 관리(출석여부, 과제 수행 정도, e-mail, Q/A 지도)
- 생활지도, e-mail 상담 등 개별지도
- 학생 교육과정 평가관리(과제, 수행, 출석, 총괄평가 등)
-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 주말 출석수업, 방학 중 집중수업, 체험학습 시 안전관리
- 창의적 산출물 대회 관련 지원
- 영재교육 운영 계획·집행·결산에 참여
- 기타 영재교육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처리

라. 영재교육 담당교원 지원 및 사기 진작

1) 영재교육 연구회 조직·운영

- 가) 대상 : 영재교육 담당교원
- 나) 시기 : 2012. 3 ~ 2013. 2(연중)
- 다) 구성 : 4개 연구회(초등수학교과연구회, 초등과학교과연구회, 중학교 영재교육연구회, 고등학교 영재교육연구회)

라) 인원 : 300명

2) 영재교육 담당교원 사기 진작

- 가) 영재교육 담당교원 선택가산점 부여
- 나) 대상 : 영재교육기관 운영 총괄(단위영재학급 포함) 및 학급담임교사
- 다) 내용 : 월 0.005점 부여

마. 영재교육기관 평가

1) 시기 : 2012. 11~12

2) 대상 : 중학생 대상 영재교육기관(14개 기관 중 3개 기관 선정 및 포상)

3) 내용 : 컨설팅 개념의 평가 실시

4) 방법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중심의 평가 실시
- 평가도구 개발 활용
- 우수 교육기관 포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5) 결과 환류

- 우수 모델 발굴 및 보완
- 교육활동 우수 사례 보급

바. 체계적인 영재학생 관리

1)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수업시수 확보

가) 시기 : 2012. 3~2013. 2

나)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다) 내용

- (1) 영재성 계발을 위한 교과학습, 현장체험학습, 영재캠프, 봉사활동,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 (2) 교과관련 연간수업시수 : 80시간 이상 운영
(단, 체험학습 또는 영재캠프 운영기간 중 교과관련 수업은 포함 가능)

2)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가) 시기 : 2012. 3~2013. 2(연중)

나)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다) 내용

-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
- 매 학기별로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
- 영재교육 대상자 소속 학교장은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영재교육 이수 상황 기록

3) 교육과정 이수자(전 교육시간의 2/3 이상 이수)에 대한 수료증 수여

가) 시기 : 2012. 12 ~ 2013. 1

나)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다) 비교 : 수료증 수여와 관련한 규정(학칙) 마련 시행

4) 영재교육대상의 법적 정원 유지

가) 시기 : 2012. 12 ~ 2013. 1

나)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다) 내용 : 학급당 20명 이내

라) 전입 : 인천관내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인천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영재교육기관의 추천 및 허가를 받아 전입하는 지역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편입 가능 (단, 법적 정원 내에서 가능)

4.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젝트 및 문제 수행학습 확대

- 1) 시기 : 2012. 3~2013. 2(연중)
- 2)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 3) 내용
 - PBL 및 3부 심화학습 중심의 수행형 교수-학습 전개
 - 개인 및 소집단 연구·조사 활동 활성화

나. 영재캠프 및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 1) 시기 : 2012. 3~2013. 2(연중)
- 2)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 3) 내용 : 친교 활동, 체험활동, 탐구·탐사활동, 토론활동, 봉사활동 등

다. 정의적 교육활동 활성화

- 1) 시기 : 2012. 3~2013. 2(연중)
- 2)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 3) 내용
 - 인성교육 : 화합, 배려, 나눔, 봉사, 협동할 수 있는 바른 인성 함양
 - 애국교육 : 바른 국가관 함양
 - 리더십 교육 : 미래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량 및 섬김의 리더십 함양

라.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적 산출물 발표 활성화

- 1) 시기 : 2012. 3~2013. 2(연중)
- 2)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 3) 내용 : 수학, 과학, 영어, 정보, 예능, 발명, 융합, 창의력 등 전 분야 프로젝트 수행결과 발표회 운영
- 4) 방법 : 프로젝트 수행 결과 발표 기회 부여

5.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영재성아 판별도구 개발 및 활용

- 1) 신뢰성 있는 영재 판별도구 개발
 - 가) 시기 : 2회(2012. 3 ~ 2013. 2)
 - 나) 내용
 - 1차 판별도구 : 영재성 판별도구
 - 2차 판별도구 : 학문적성 판별도구
 - 3차 판별도구 : 심층 면접
 - 다) 방법 : 자체 및 위탁 개발(KEDI 영재교육센터)
- 2) 영재 판별도구의 활용
 - 가) 시기 : 2012. 12 ~ 2013. 3
 - 나)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 다) 방법
 - 영재성 검사
 - 수학·과학·정보 학문적성 검사
 - 정의적 태도 검사

나.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

- 1)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 가) 시기 : 2012. 3 ~ 2013. 2(연중)
 - 나) 내용
 - 운영 프로그램 :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 교수-학습 프로그램 : 교수-학습지도안
 - 다) 방법 : 위탁(KEDI 영재교육센터) 및 자체 개발
 - 라) 목표
 - 위탁 개발 : 예술분야
 - 자체 개발 : 수학, 과학, 예술, 영어, 발명, 정보, 기타 등
- 2)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활용
 - 가) 시기 : 2012. 3 ~ 2013. 2(연중)
 - 나) 내용
 -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학습 운영
 - 산출물 제작 및 구안 중심의 학생 중심활동 운영
 - 다) 대상 : 관내 전 영재학급(지역공동 및 단위학교)과 영재교육원
 - 라) 방법 : 개발 자료를 인천사이버영재교육(gifted.edu-i.org) 홈페이지에 탑재 및 공유·활용

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 1) 목적
 - 가) 체계화된 연수 체제 구축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나) 연수과정의 단계별 특화로 연수 프로그램의 질 향상
- 2) 방침 :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 3) 교원의 경력 및 영역별 맞춤형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 가) 기초과정 : 영재교육 기본 소양 함양 영재교육 일반,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등
 - 나) 심화과정 : 전공별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 다) 전문과정 : 영재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실습
 - 라) 국외과정 : 국제수준의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 4)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 가) 기초연수(60시간, 10일간)
 - 연수인원 : 160명 내외(초등 80명, 중등 80명)
 - 연수시기 : 초등교사(2012. 8월 중), 중등교사(2013. 1월 중)
 - 나) 리더십연수(60시간, 10일간)
 - 연수인원 : 10명(초·중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 연수시기 : 2013. 1. ~ 2
 - 다) 심화연수(120시간)
 - 연수인원 : 10명(초·중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 연수시기 : 2012. 6. ~ 11
 - 라) 국외 연수
 - 연수인원 : 10명(초·중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 연수시기 : 2012. 7 ~ 8(2주 내외)

라.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 1) 워크숍 개최
 - 가)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영재교육기관 운영 담당교원
 - 나) 시기 및 주관 : 2012학년도 하계 방학
 - 다) 내용 : 영재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방안 등
- 2) 세미나 개최
 - 가) 대상 : 영재교육 담당교원
 - 나) 시기 및 주관
 - 2012학년도 전반기(2012. 5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 2012학년도 후반기(2012.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 다) 내용 : 교육과정 모델 편성·운영, 창의산출물 지도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지도 관련 연수 등

마. 영재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 1) 대상 : 인천부내초등학교
- 2) 기간 : 2011. 3. 1~2013. 2. 28.(2년간)
- 3) 내용 : 관찰·추천 선발을 위한 G·T school 연계 영재학급 운영

바. 영재교육 홍보활동 강화

- 1) 영재교육 홍보
 - 가)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
 - 나) 시기 : 2012. 3월 ~ 4월
 - 다) 내용 : “영재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
- 2) 영재교육기관별 자체 홍보
 - 가) 홈페이지 탑재 및 자체 홍보물 제작·배포
 - 나) 각종 회의시 홍보
 - 다) 영재교육 전문가 초빙 강의 실시
- 3) 각종 연수를 통한 홍보
 - 가) 장학지도 자료에 영재교육 안내
 - 나) 언론매체, 교육청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
 - 다)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

V.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계획

1 추진 배경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 공정한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2 관련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787호(2009. 7. 10)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추진

3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영재교육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 선진 각국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
-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후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월성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

- 현재 영재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이 있음

4 | 선발제도 전환 방침

- 점진적으로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로 전환
 - 2012학년도(2011년 12월) : 남부,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관찰·추천 선발
기타 지역은 종전방식인 다단계 평가로 선발
 - 2013학년도(2012년 12월) : 관찰·추천 선발 확대
- 단위학교 영재교육대상자학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5 | 시범 운영 세부 내용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학생선발 방법을 현행 다단계 평가 방식에서 관찰·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
- 영재교육을 소수 대상 특수교육 방식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잠재능력,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개편
-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교과지도교사, 영재판별교사가 관찰한 결과 및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추천위원회'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천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우선 도입하여, 교육기회가 적은 아동을 적극 발굴 육성
- 단위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심화교육 실시

나.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추진 일정

- 일정

내 용	201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영재대상자 선발 계획 수립	→	→	→	→	→	→	→					
■영재교사 연수 준비						→					→	
■영재교사 연수(관찰·추천)							→	→				
■영재교사 배치 및 활동(관찰·추천)									→	→	→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원 추천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지역교육지원청 관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에 관찰·추천 선발 내용 포함

- 관찰·추천 영재교사 연수 : 2012. 7 ~ 8
- 영재교사 배치 및 활동(관찰·추천) : 지역교육지원청 관내 영재판별교사 배치
 - 단위학교 초등 6학년 학생 중 수학·과학 영역 잠재력 보유 학생 관찰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

1단계	관찰·추천(단위학교 영재학급 수료예정자)	단위학교 관찰·추천교사
↓		
2단계	남,북,동,서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의 3%이내 강화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의 10%이내 (소수점이하 올림) (재학생수 기준일은 2012.11.01임)	학교영재추천위원회 (학교에서 추천 심의 완료 후 2012.12.01까지 영재교육기관에 추천)
↓		
3단계	영재성검사(정원의 1.2배수 선발)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012. 12. 9. 15:00
↓		
4단계	심층면접(정원 선발)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012. 12. 23. 15:00

다. 선발인원 및 대상

영재교육원	선발인원	대상	문의
남부영재교육원	40(2학급)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6학년	장학사 심현보 (☎ 770-0119)
북부영재교육원	40(2학급)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6학년	장학사 윤진수 (☎ 510-5408)
동부영재교육원	60(3학급)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6학년	장학사 이인호 (☎ 460-6214)
서부영재교육원	60(3학급)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6학년	장학사 김경아 (☎ 560-6613)
강화영재교육원	20(1학급)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6학년	장학사 정영선 (☎ 930-7753)

라. 선발 방법

- 1단계(대상자 선정) : 각 학교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여 단위학교영재학급 이수자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관찰 추천 대상자로 선정함.
- 2단계(추천) : 영재판별교사에 의해 학교영재추천위원회에 추천 후 학교영재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3단계 응시대상자를 해당 영재교육 기관에 추천
 - 응시대상자 명단, 응시원서를 2012.12.01까지 해당 영재교육 기관에 직접 제출
 - 추천인원의 20%이내에서 관련 증빙 자료(1부) 첨부하여 사회적 배려대

상자 추천 할 수 있다. (별첨 참조)

- 정원 외 추천 :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지역공동 영재학급(수학·과학, 발명)수료예정자 및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기초/심화 전과정 수료예정자(수료 예정증명서 1부 첨부)
 - ※ 수학·과학 영재학급 수료예정자는 수학·과학 분야로 발명영재학급 수료예정자는 발명 분야로 추천

3) 3단계(영재성 검사) : 각 초등학교에서 선정·추천한 3단계 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 실시 : 2012. 12. 9. 15:00 ~ 16:30 (예정)
- 주관기관 및 시험장소 : 각 영재교육 기관
- 4단계 심층면접대상 발표(1.2배수) : 2012.12.16. 12:00, 각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4) 4단계(심층면접) : 각 영재교육원에서 선정·추천한 4단계 시험 응시대상(정원)

- 시험 실시 : 2012. 12. 23. 15:00, 수학·과학 상식, 정의적 태도 등
- 주관기관 및 시험장소 : 각 영재교육 기관
- 2012학년도 영재교육대상 발표 : 2013. 1. 4. 12:00, 각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 ※ 자세한 사항은 영재교육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응시대상자 제한

- 지원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별첨 참조)에 대하여 선발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음(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체크리스트 포함하여 접수 산출)
-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운영되는 교육기관에는 이중 등록할 수 없음
- 재학 중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운영되는 타영재교육기관에 응시할 수 없음
-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과 과학고등학교의 영재교육원에 중복 합격 배제 (고의에 의한 중복 합격은 합격 취소)

바. 관찰·추천의 실제

※ 반영비율 및 항목 등은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영재선발 추천선정 위원회에서 선발계획(안) 심의 후 확정

※ 학교 여건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음

- 1) 수학 및 과학관련 경진 대회(10점) : 인천광역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청,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한 수학, 과학 관련 경진대회 및 이를 통한 전국대회 (예, 인천발명품경진대회, 전국발명품경진대회, 인천과학전람회, 전국과학전람회 등)
- 2) 학업성취도 평가(50점)
 - 정기고사 중 수학, 과학 점수 반영(1학기 중간,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 영재학급에서의 창의적 과제 해결 능력(질의응답, 보고서 등)

3) 관찰·추천(40점)

- 가) 추천을 위한 영재교육 대상자 관찰 : 2012. 5월 ~ 12월, 80시간 이상
- 나) 관찰·추천을 위한 영재학급용 교수 학습 자료 활용
 - 자료 내용 : 초 6학년 영재학급 지도 자료
 - 탐구실험 또는 과제 해결을 통해 행동 특성 관찰
- 다) 답임교사 및 영재판별교사에 의한 영재행동특성 체크리스트 점수와 학문 적성 및 인성 검사 체크리스트 점수를 40점 만점으로 환산(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 산출,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영역 구분	수학, 과학 관련 경진대회		관찰·추천 점수	학업성취도 평가 (과제수행 평가)	영재성 검사	심층 면접	계	비고
	국무총리표상 이상	10점						
1차 선발	10점	장관상	8점	40점	50점	·	100점	단위학교
		교육감상	6점					
		교육장상	4점					
		학교장상	2점					
2차 선발	·	·	·	·	100점	·	100점	지역공동영재교육기관
3차 선발	·	·	·	·	·	100점	100점	지역공동영재교육기관

※ 반영비율 및 항목 등은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영재선발 추천 선정 위원회에서 선발계획(안) 심의 후 확정

4) 학교 영재선발추천위원회 심의

- 가) 인원수 : 5~7인
- 나) 구성 : 내부위원(학교장 및 교사위원) 3~4인, 학부모위원 등 외부 위원 2~3인

사. 동점자 처리 규정

※ 3~4단계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문항으로 동점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나,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규정은 문항 난이도에 따라 추후 배부할 계획임

< 영재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제공)

()초등학교 이름 ()

■ 지도하시는 학생의 평소 행동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0표 해 주십시오

(한 곳만 0표해주세요.)

번호	문항	영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점수
1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줄 안다.	지적능력						
2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인과 관계를 빨리 파악한다.	지적능력						
3	관심 영역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적능력						
4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지적능력						
5	관심분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다	지적능력						
6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한다.	지적능력						
7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력이 우수하고 속달하는 속도가 빠르다.	지적능력						
8	새로운 사실 혹은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한다.	창의성						
9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창의성						
10	관심 영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창의성						
11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머감을 가지고 즐겁게 접근하는 자세를 보인다.	창의성						
12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창의성						
13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상하기를 좋아한다.	창의성						
14	규칙을 만들고 집단 활동을 이끈다.	리더쉽						
15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리더쉽						
16	다른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한다.	리더쉽						
17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할 줄 안다.	리더쉽						
18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주도성						
19	혼자서 독립적으로 학습하기를 좋아한다.	자기주도성						
20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자기주도성						
합계								
환산점수(30점)								
		영역	지적 능력	창의성	리더쉽	자기 주도성		
		점수						

<학문적성 및 인성 특성 체크 리스트>

()초등학교 이름 ()

■ 지도하시는 학생의 평소 행동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0표 해 주십시오.

(한 곳만 0표해주세요.)

번호	문항	영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점수
1	일반적인 지적능력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한 가지 분야(또는 몇 개)에 더 집중한다.	학문적성						
2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시간이 길다.	학문적성						
3	수치해석에 관심이 있다.	학문적성						
4	문제의 중요한 특징과 해결책을 잘 기억한다.	학문적성						
5	00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	리더쉽 특성						
6	00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리더쉽 특성						
7	00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청소를 한다.	창의적 인성						
8	00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적 인성						
합계								
환산점수(10점)								
		영역	학문 적성	리더쉽 특성	창의적 인성			
		점수						

<영재교육 대상자 평가 자료>

()초등학교

연번	이름	각종경시 대회 (10점)	관찰 추천점수		학업성취도(과제수행 평가)(50점)						계 (100점)	순위	
			영재행동 특성 (30점)	학문적성 및 인성 (10점)	수학			과학					환산 점수 (30)
1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 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지원사업(2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2층)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정의 학생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정의 학생

- 4)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차차상위계층 범위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정의 학생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정의 학생

<표 1> 2011년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B=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 (B×0.02665)	16,129	27,463	35,527	43,592	51,656	59,721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C=A×1.5)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보험료 (C×0.02665)	20,161	34,328	44,409	54,490	64,570	74,651

※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 5)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초등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게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증빙 서류

- 실직급여수급증서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5호에 따른 학생
 -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학생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
- 10)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의 자녀
- 11) 다문화가정의 자녀

※ 각 초등학교는 교내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 추천 [추천 절차]

-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 표시 →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및 확인 → 추천 (증빙서류 제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5)번의 경우
 - ▶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한 증빙서류 있는 경우 :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확인 후 추천 (추천위원회 의견서와 증빙서류 제출)
 - ▶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제출

2012년도 영재교육 운영 지침

I.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지침

1 추진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영재교육법시행령 [2008.10.14 대통령령 제21081호]
- 제2차 영재교육 진흥계획('08~'12) [2007.12.13 교육인적자원부]
- 2012년 인천광역시영재교육시행계획[2012.2.16 인천광역시교육청]

2 추진 목적

- 영재성 계발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 영재교육 기회 확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 변화하는 진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

3 추진 배경

가. 2011년 영재교육 현황

구 분	학급수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대비 비율(%)
	2010	2011	2010	2011		
초등학생	110	310	2,643	6,959	173,720	4
중학생	20	40	1,024	1,306	108,930	1.20
고등학생	24	24	480	480	110,467	0.43
소계	154	374	4,147	8,745	393,117	2.22

나. 연도별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	0.71	0.85	1.02	2.22	3.25
영재교육대상자 목표 인원	2,893	3,451	4,147	8,745	12,794

※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393,117명(2012.2.29일자 기준)

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학생 및 학부모의 영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 ※ 2011학년도 초등학교 영재학급 및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경쟁률 : 평균 경쟁률 8:1
- 방과후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먼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

4 운영 방침

- 초등학교는 4,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한다(단, 4, 6학년 2학급은 필수 운영하고 5학년은 희망사항이며 소규모 및 도서지역 학교는 무학년제 1학급을 운영함)
- 중학교는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형태의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한다(1교 무학년제 1학급 운영 권장)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비 부담 수준으로 운영(단,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관내 구청과 협력하여 교육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음)
-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 단위학교 영재학급 이수학생에 한하여 상위학교급 영재교육기관의 관찰·추천 선발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 운영 영역은 수학·과학 영역뿐만이 아닌 인문, 발명, 영어, 통합, 예술, 정보 등 학교의 강사 수급 상황에 따라 가능한 모든 영역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학령에 맞는 진로적성 탐색 단계의 영재교육을 진행한다.
- 2012년도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점차 확대 운영한다.

5 영재학급 설치 유형 및 운영 대상 학교

가. 영재학급 설치 유형

- 단위학교 영재학급 : 단위학교 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운영(단, 도서지역, 농어촌 지역 등은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대상 학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6 추진 계획

가. 추진 일정

시기	내용	추진 기관
2012. 3. 16(금)	계획 수립 및 운영 안내	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초·중학교
2012. 3.19(월)~3.30(금)	영재학급 운영 계획서 제출	초·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2012. 4.	지정 통보 및 선발	시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초·중학교
2012. 12	2013년 교육대상자 선발	해당 학교
2013. 1월 중	2012년 교육 결과 평가 및 정산서 제출	초·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나.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 당 승인 학급 수 :

- 초등학교는 4, 6학년 각각 1학급씩 2학급
(단, 초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4, 5, 6학년별 1학급씩 편성·운영 가능하며, 아울러 학교 규모 또는 희망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학년별 2학급씩 편성·운영할 수도 있음.)
- 중학교는 희망학교에 한해 1학급 운영(단,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학년별 1학급씩 운영할 수 있음)

2) 승인·지정 : 영재학급 설치계획서, 운영계획서 제출 → 지정·통보

3) 운영 영역 : 학교 실정 및 교육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영역 운영 가능

4) 교육 대상 선발

-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급적 관찰·추천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구분	선발 방식	시기	비고
예시	· 관찰·추천 · 학교 자체 기준	· 학교 자체 일정	· 교육청에서는 관찰·추천 매뉴얼 제공

- 2013학년도 단위학교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은 2012년 12월에 실시함
 -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할 경우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과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폭넓은 독서와 탐구활동 경험 등이 중요한 선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장이 영재교육대상 추천·선정심사위원회(해당분야 전문가 5~7인 이내)를 구성·운영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최종 선정
 - ※ 민원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발

5) 학급 편성

- 학년별 또는 무학년제로 구성
-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편성(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 초등학교 4, 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편성
(희망인원이 적을 경우 무학년제 편성 운영 가능)

6) 교육 과정

- 영재학급의 교육 과정은 별도의 운영 규정(학칙)으로 정함
- 영재성 계발을 위한 교과관련 운영시간을 연간 80시간 이상 확보
(단, 현장 체험학습 및 영재캠프 등의 교실 밖 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과관련 운영시간에서 제외하나 단체활동 중 교과 운영을 하였을 경우 포함 가능)
-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도자료집 활용
- 수료 인정 : 교과관련 시간 및 각종 교실 밖 활동을 포함함 총 교육 시간의 2/3이상 이수
- 영재 교육 이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 근거 :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훈령 187호)(2010.7.2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2010.3.)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 기재 방법

기재 란	기재 예시	비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영재학급 초등(중)학교 6(2)학년 과정 ○○영역 ○○시간 중 ○○시간 이수 :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이 과정을 제시하는 문제해결력이 돋보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2010.3.) 참조

7)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총괄교사의 자격

- 당해 학년도의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영재교육 관련 **집합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 또는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

8)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총괄교사의 업무

-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수립·운영·예산 집행 등 업무 총괄
- 영재캠프, 현장체험학습 및 창의·산출물발표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
- 그 밖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9) 소요 예산 확보

- 강사 수당 및 운영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수익자 부담, 중학교는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함

다. 시행 시 유의사항

- 1) 영재학급 운영은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 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한다.
- 3) 수익자 부담 이외의 경비는 학교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4) 도서 및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은 방과 후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5)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사용하여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다.
- 6) 영재학급 담당교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7) 각종 지원금을 활용할 경우 예산지원 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 8)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영재학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기대 효과

- 1)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
- 2) 영재교육대상자 확대에 기여
- 3) 영재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4) 주5일제 수업 확대에 따른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서식 1>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계획서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계획서

□ 학교명 :

구분		내용	
설치영역	수학 · 과학		영재학급 설치유형 단위학교() 인근학교와 공동()
학교장 성명			운영대상 학년 ※예 : 초6, 초5,6(무학년), 중1,2,3(무학년) 등
담당교사	성명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 미이수()
	전공		
	연락처	학교전화 : E-mail :	핸드폰 :
운영장소	※ 학교주소		
시설	※ 영재학급 운영과 관련된 학교시설(실험실 등)		
소요예산 편성내역	※ 영재학급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 ① 선발 비용(고사감독수당, 채점수당 등) ② 특강 강사료 ③ 지도수당 ④ 협의회비 ⑤ 재료비 ⑥ 사무용품 구입비 ⑦ 보고서제작비 ⑧ 학습자료(문헌) 구입비 ⑩ 기타비용 등		
※별도 제출 서류	1.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설치 운영 동의서 제출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계획서

000학교

I. 목적 및 운영 방향

1. 명칭 : ○○○○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2. 목적
3. 운영 방침

II. 운영 규정(학칙) 및 조직

1. 운영 규정(학칙)
2. 영재학급 선정심사위원회
3. 운영 조직 및 역할

III. 세부 운영계획

1. 학생 선발 계획
2. 강사 운영 계획
3. 영재교육 세부 운영 계획

IV. 소요경비 확보 및 편성 운영

※ 위 요소를 포함하여 필히 3쪽 이내로 작성

II.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

1 목적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선택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영재교육 운영의 체계화 및 교수-학습의 질 관리를 통해 수월성 신장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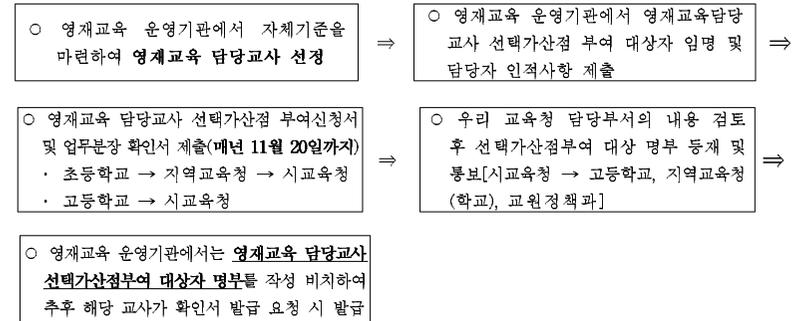
2 추진 배경

- 가. 영재교육 운영확대에 따른 관련업무의 신설 및 증가
- 나.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역할과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 증대

3 추진 근거

- 가. 영재교육진흥법(2005. 12. 7 개정)
- 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2006. 12. 21 개정)
- 다. 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2008. 06. 30 개정 고시) 제5조 7항
- 라. 2011년 중등 명부작성 실무자료(2011.12.31. 기준)

4 선택가산점 부여 업무 처리과정



5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기관(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및 사업소)

6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 가. 관내 전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영재학급,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총괄 교사
- 나.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담임교사(단위학교는 2013년도부터 시행 예정)

7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

가.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총괄 교사

당해 학년도의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영재교육 관련 **집합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이수(또는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재교육지도강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

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총괄 교사

당해 학년도의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영재교육 관련 **집합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이수(또는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

다.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담임교사

당해 학년도의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영재교육 관련 **집합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이수(또는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로써 연간 30시간 이상 교육활동에 참여

(단, 30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은 교과수업 뿐 아니라 개강·수료식 참여, 현장체험학습 및 영재캠프,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학부모 상담 등의 교육활동 참여 시간을 포함하며, 담임교사는 교과수업 외의 학생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8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역할

가. 운영 총괄교사의 역할

- 1)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수립·운영·예산 집행 등 업무 총괄
- 2) 영재캠프, 현장체험학습 및 창의·산출물발표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
- 3) 그 밖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나.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

- 1) 영재학생들의 출결관리(조·종례), 생활기록부 작성 및 상담
- 2) 영재캠프, 체험학습, 개강식, 수료식 등 각종 행사 준비 및 학생 지도
- 3) 그 밖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9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수

기관명	학급수	대상인원				
		운영 총괄교사	학급 담임교사	계		
남부영재교육원	6	1	6	7		
북부영재교육원	6	1	6	7		
동부영재교육원	9	1	9	10		
서부영재교육원	9	1	9	10		
강화영재교육원	3	1	3	4		
과학영재교육원	6	1	6	7		
영어영재교육원	6	1	6	7		
인문영재교육원	2	1	2	3		
예술영재교육원	4	1	4	5		
남부	송현초등학교	1	1	2		
	관교초등학교	6	1	7		
	신선초등학교	4	1	5		
	대화초등학교	4	1	5		
북부	미산초등학교	4	1	5		
	굴포초등학교	4	1	5		
	백운초등학교	4	1	5		
서부	부일초등학교	4	1	5		
	안산초등학교	6	1	7		
	봉수초등학교	4	1	5		
	완정초등학교	4	1	5		
동부	성기초등학교	4	1	5		
	청량초등학교	6	1	7		
	약산초등학교	4	1	5		
	석천초등학교	4	1	5		
강화	동막초등학교	4	1	5		
	강화초등학교	2	1	3		
인천예술고등학교	7	1	7	8		
문학정보고등학교	6	1	6	7		
제물포고등학교	4	1	4	5		
인천고등학교	4	1	4	5		
인천여자고등학교	4	1	4	5		
부평고등학교	4	1	4	5		
계산고등학교	4	1	4	5		
가림고등학교	4	1	4	5		
발명	초등학교	학인초등학교	2	1	2	3
		부마초등학교	2	1	2	3
		신학초등학교	2	1	2	3
		담방초등학교	2	1	2	3
		소래초등학교	2	1	2	3
		안산초등학교	2	1	2	3
	중학교	원당초등학교	2	1	2	3
		동인천여자중학교	2	1	2	3
		갑릉초등학교	2	1	2	3
		인주중학교	1	1	1	2
		구산중학교	1	1	1	2
초등학교 단위영재학급	만수여자중학교	1	1	1	2	
	인천해송중학교	1	1	1	2	
	동인천여자중학교	1	1	1	2	
	계산중학교	1	1	1	2	
초등학교 단위영재학급	400	200	0	200		
중학교 단위영재학급	40	40	0	40		
계	621	289	181	470		

10 선택가산점 부여 평정 기간

선택가산점부여 평정기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함.

11 선택가산점 부여 평정점

영역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0.00017	0.005	0.5

12 선택가산점 부여 신청 시 제출서류

- 가.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신청서 1부(별첨1 서식)
- 나.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업무분장 역할 확인서 1부(별첨2, 별첨3 서식)

<별첨 1 : 서식>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신청서

- 영재교육기관명 :
- 가산점 부여대상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교사	○○○	-
가산점 부여기간		부여 가산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점	

작성자 : 직 교감(○○과장) 성명 (인)

위와 같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선택가산점 부여를 신청합니다.

2012. 11 . .

○○○○○ 학교 장(직·사 인)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직·사 인)

<별첨 2 : 서식>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업무분장 역할 확인서

- 영재교육기관명 :
- 업무분장 확인사항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무분장내용	업무분장기간	비고
교사		-	운영총괄교사	○○월 (2012년 ○월 ○일~ 2012년 ○월 ○일)	

작성자 : 직 교감(○○과장) 성명 (인)

- 업무분장 역할 확인서

연번	업무분장 내용	역할 이행 여부(○, ×)
1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수립·운영 등 운영 총괄	
2	영재교육기관 운영 예산 집행	
3	영재캠프, 현장체험학습 및 창의·산출물발표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	
4	그 밖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위와 같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업무분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합니다.

2012 . 11. .

○○○○○ 학교 장(직·사 인)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직·사 인)

<별첨 3 : 서식>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업무분장 역할 확인서

- 영재교육기관명 :
- 업무분장 확인사항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무분장내용	업무분장기간	비고
교사		-	학급담임교사	○○월 (2012년 ○월 ○일~ 2012년 ○월 ○일)	

작성자 : 직 교감(○○과장) 성명 (인)

- 업무분장 역할 확인서

연번	업무분장 내용	역할 이행 여부(○, ×)
1	지도강사로서 연간 30시간이상 교육활동 참여	
2	영재학생들의 출결관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상담	
3	영재캠프, 현장체험학습 및 창의·산출물발표대회 학생 지도	
4	사전수업 준비, 개강식 및 수료식 등 각종 행사 준비 및 참가	
5	그 밖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위와 같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업무분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합니다.

2012. 11. .

○○○○○ 학교 장(직·사 인)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직·사 인)

<별첨 4 : 서식>

영재교육 담당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부

- 영재교육기관명 :

번호	해당 년도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업무분장 내 용	업무분장 기 간	선택가산점 부여점수
1		교사			-		○○월 (2012년 ○월 ○일~ 2012년 ○월 ○일)	
2		교사			-			
3		교사			-			
4		교사			-			
5		교사			-			
6		교사			-			
7		교사			-			
8		교사			-			
9		교사			-			
10		교사			-			
11		교사			-			
12		교사			-			
13		교사			-			

III. 영재교육 운영 예산 집행 지침

1. 영재교육 운영예산 : 2,827,370천원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예산액	비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1월 ~ 2월	36,330천원	
영재교육기관 평가	11월~12월	2,020천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3월~12월	17,000천원	
영재교육진흥위원회	3월, 11월	1,210천원	
사이버영재교실운영	1월~12월	1,440천원	
영재교육담당교원연수	1월~12월	163,500천원	특교(40,000), 자체
영재교육관별도구개발	3월~12월	33,000천원	
영재학급운영	3월~2013. 2월	1,762,000천원	
영재교육연구회 운영	3월~2013. 2월	16,000천원	특교
사이버프로그램 개발	3월~2013. 2월	100,000천원	특교(교육개발원위탁)
영재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7, 8월	20,000천원	특교
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	3월~12월	20,000천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1월~12월	100,369천원	
남부교육지원청	1월~12월	90,059천원	
북부교육지원청	1월~12월	99,996천원	
동부교육지원청	1월~12월	135,543천원	
서부교육지원청	1월~12월	133,567천원	
강화교육지원청	1월~12월	52,336천원	
합 계		2,827,370천원	

2. 영재교육 운영 예산 집행 방법

가. 운영비 :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름.

나. 강사수당 지급 요령

1) 지역공동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 교육강사 수당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 일반강사 중 교사의 강사수당은 한 시간 강의에 7만원, 2시간 연속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4만원을 더하여 지급한다.(단, 영재교육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기관 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특별강사 수당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고한다.

2) 단위학교 영재학급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계획에 따르되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1차시 강사수당을 4만원 내외로 권장함

IV. 영재교육 활동 중 안전관리 지침

1. 기관별 영재교육 담당교원 실험안전 연수 실시(학기별 1회 이상 실시)
2. 과학실험보조원 활동 강화
 - 실험수업 관련 지도교사의 업무 보조 철저 : 실험기구 및 시약, 재료 준비 및 정비, 실험지도 보조
 - 실험실 취급 위험물질 및 시약 안전관리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 (무경험자는 계약 임용 후 즉시 실시)
3. 실험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철저
 - 실험안전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운영, 실험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 실험실 안전점검표 활용, 실험실 안전 장구 및 설비
 - 사전실험을 통한 실험위험도 인지, 위험한 실험은 시범 실험 또는 동영상 자료 활용
 - 실험수업 전 안전교육 실시
4. 실험안전 장구 및 설비 확충
 - 안전장구 구비 및 착용 지도(학생용 실험복, 장갑, 고글, 마스크 착용 필수화) 2012학년도 최소 1개 학급 학생이 착용할 수 있도록 구비
 - 안전설비 설치 : 소화기, 눈 세척기, 비상 샤워, 흡후드, 밀폐시약장 등을 설치
5. 캠프 및 현장 체험학습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안전사고 예방 자체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6. 기타
 - 실험안전사고 발생 후 피해 교사·학생 보호 : 학교안전공제회(학생)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보험(교사)과 연계
 -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추진 : 비상사태 대비 응급조치 훈련 실시
 - 비상연락체계 구축 : 화재, 폭발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소방서(119), 경찰서, 병원(학교지정병원),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게시

※ 행정사항

1. 지역공동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수료생 진학 현황 제출
(창의인성교육과-2042)
가. 초등학교 영재학급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3.9까지)
나.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3.9까지)
2. 2012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지도강사 현황 제출(창의인성교육과-1305)
가. 초·중학교 영재학급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3.16까지)
나.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3.16까지)
3. 2012학년도 영재교육 담당교원 선택가산점 부여 세부 지침 알림 (창의인성교육과-1314)
가.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인적사항 제출
1) 초·중학교 영재학급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3.16까지)
2)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3.16까지)
나. 선택가산점 부여신청서 제출
1) 초·중학교 영재학급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11.16까지)
2)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11.16까지)
4. 2012학년도 초·중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 운영 안내(창의인성교육과-2700)
가. 제출처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3.28까지)

Q & A

Q 발명영재학급 학생의 상위 영재교육기관 진학에 대해서

A

- 2012학년도 초등발명 영재학급의 수료생은 중학교 발명영재학급의 1단계 전형의 정원 외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
- 중학교 발명영재학급에서 1, 2, 3학년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고등학교 영재학급의 정원 외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

Q 초등학생 및 중학생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운영에 대해

A

- 영재학급 설치 유형 : 단위학교 영재학급 (단, 도서지역, 농어촌 지역 등은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대상 학교 : 초등학교는 필수, 중학교는 희망교에 한함
- 운영 영역 : 진로탐색이 가능한 과목 및 비교과 전 영역(융합형)
- 초등학교 설치 학급수 : 4학년과 6학년 각 1학급 20명 이내
- 5학년은 희망에 의해 설치하고,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4~6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1학급을 운영할 수도 있음
- 초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4, 5, 6학년별 1학급씩 편성·운영 가능하며, 아울러 학교 규모 또는 희망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학년별 2학급씩 편성·운영할 수도 있음.
- 중학교 설치 학급수 : 무학년 1학급 20명 이내(단,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학년별 1학급(20명 이내)씩 별도 운영할 수 있음)

Q 영재학급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

A

-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32조)로 하며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를 준수(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등)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Q 영재학급의 수업에 대해서

A

- 영재수업 관련하여 교과수업은 교과 전용교실(예, 과학실험실)에서 실시하고 사용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전기 합선 등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
- 단위학교에 배치된 실험보조원이 영재교육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은 교과,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리더십교육, 영재캠프 등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고 연간 교과관련 수업 시수는 80시간 이상 확보하여 실시함을 권장한다.

Q 영재학급 교재 안내에 대해서

A

- 초등학교 6학년 교수·학습 자료집 발간(2010년), 초등학교 4, 5학년 교수·학습 자료집 발간(2011년)되어 있음. 학교로 배부되었으며, 지역과학교육관에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안내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며, 전년도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Q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교육비에 대해서

A

- 초등학교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비 부담 수준으로 운영[단, 운영비 일부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1학급당 150만원 내외, 최대 2학급 지원)하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음]
- 중학교 : 전액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내 방과후 학교 교육비 부담 수준으로 운영(단,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음)
- 도서 및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은 방과 후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사용하여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음
- 학부모의 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Q 지역공동 영재교육기관 운영비 및 강사수당 집행에 대해서

A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39쪽의 영재교육 운영예산 지침 참조

- 2012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다

구분		단 위	단 가	비 고
시험수당	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공무원임용 25,000원 기타시험 3,500원	* 출금수당은 연속 12시간 이상 출금 상태에서 출제, 문제 선정, 문제 편집 및 편찬을 담당할 경우에 한하되, 전체 감금시간을 24로 나눈 일수로 지급하고,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② 채점비 객관식	10문제당	11원	
	주관식(기본료) (초과)	10부까지 부당	30,000원 800원	
	③ 문제선정심의비	과목당	45,000원	
	④ 문제편집, 편찬비	일당	10,000원	
	⑤ 시험감독비	일당	70,000원	
강사수당	⑥ 면접, 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 영재교육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출금수당	일당	30,000원	
	교육공무원	1시간 초과시간당	70,000원 40,000원	

※ 부 록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14 대통령령 제210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3조 삭제<2006.12.21>

제4조 삭제<2006.12.21>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06.12.21>)

- 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6.12.21>
-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개정 2006.12.21>)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2.21>
- 제7조 삭제<2006.12.21>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1]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0조의2(시·도위원회의 간사)

- ① 시·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시·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1>
- ③ 삭제<2006.12.21>
-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2.21>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개정 2006.12.21>)

-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

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개정 2006.12.21, 2008.10.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 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6.12.21>

제13조 삭제<2006.12.21>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 ①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6.12.2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06.12.21>)

-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6.12.21>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 ① 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 ①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 2006.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8.2.29>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1>

-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1>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12.21, 2008.10.14>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6.12.21, 2008.10.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08.10.14>

- ④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신설 2006.12.21, 2008.10.14>
- ⑤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6.12.21, 2008.10.14>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8.10.14>
- ③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10.14>
- ④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8.10.14>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근무 등)

-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12.21>
- ③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신설 2006.12.21>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 ①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06.12.21, 2008.2.29>

-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08.10.14>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 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 ⑧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①삭제<2008.10.14>

- ② 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21, 2008.10.14>
- ③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개정 2006.12.2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 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 ①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4>
-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6.12.21>

제37조 삭제<2006.12.21>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 2. 특례자 전학·배치심사
-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영재교육전문가
 -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영재교육연구원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영재교육연구원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영재교육연구원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6장 보칙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운영)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0.14>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의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의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0.14>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0.14>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

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08.2.29>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개정 2006.12.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교재개발비·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21, 2008.2.29>

부칙 <제17578호, 2002.4.18>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영재교육대상자 추천기준 공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받은 학교는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추천기준을 선정신청접수일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③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임용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영재학교 교원 및 영재학급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4>생략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54호, 2006.12.2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로 보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③ (선정추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추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영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호,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제23조제3항 전단·후단, 제23조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9조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81호, 2008.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

구분	임용기준
영재학교 교장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교감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담당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급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별표 2] <개정 2008.2.29>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

구분	임용기준
원장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자격이 있는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분야 또는 이와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

구분	임용기준
교과담당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상담담당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상담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사서담당 강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